



Sung & Associates CPA, LLC
Certified Public Accountants & Business Advisors

사장님/ 대표님,

SBA 의 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(EGDL) 과 \$10,000 Advance/Grant 지급은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. \$10,000 Advance 는 SBA website (www.sba.gov) 통하여 쉽게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지정 은행구좌에 \$10,000 입금이 됩니다. EGDL도 website를 통하여 신청이 이루어 지지만, 대출금액이 최대 \$2,000,000 에 이르고 SBA에서 대출금액 결정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서류 (Upload)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.

Paycheck Protection Program (PPP) 이 가장 중요한 (중)소기업 지원 대출금이며 \$100,000 이하 종업원의 급여를 유지하는 한 대출금의 상당부분 (8주분의 급여와 일정한 필수자금) 상환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(중)소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SBA를 통한 대출 프로그램은 \$10,000 Advance 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설명드린 SBA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Jung (Richard) H. Sung, CPA (T. 201-286-1869)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 SBA 전문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.

The CARES Act

1. Paycheck Protection Program (SBA 7 (a) loan)

- The CARES Act 에 의해 (중)소 기업의 지속적인 직원 채용을 위해 \$350 billion 의 대출금이 배정됨.
- 자격 조건은 500 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(중)소기업, 비영리단체, 지영업자가 대상이며 해당 industry 의 SBA size standard 가 500 명 이상의 직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
- 숙박 (hospitality) 및 식당 (restaurant) 업종의 경우 직원수 계산이 location 별로 이루어짐.
- 직원수 계산에 있어 full-time 직원 뿐 아니라 part-time 직원도 포함.
- 자격이 되는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SBA (Small Business Administration) 로 부터 \$10,000,000 또는 대출전 1 년 (2019 년) 동안 월 평균 급여 비용 (payroll costs) 의 2.5 배 금액과 2020 년 1 월 31 일 이후 SBA disaster assistance loan 받은 금액의 합계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Seasonal business 는 월 평균 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2019 년 2 월 15 일 부터 6 월 30 일 또는 2019 년 3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 기간을 사용 가능함.
- 급여 비용 (payroll costs) 은 다음의 비용들을 포함.
 - 정상급여 및 팁 (all wages & tips)
 - 퇴직급여 지급액 (allowances for dismissal or separation)
 - 가족휴가 (family leave) 및 병가에 대한 지급액 (sick pay)
 - 의료보험료, 은퇴 연금 및 주세/ 지방세 납부액 (contributions to maintain group health care,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, and state and local tax payments)
- 급여 비용 (payroll costs) 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.
 - 고액봉급자 급여 및 자영업자 소득 중 연 \$100,000 초과분 (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prorate basis 로 계산됨)
 - 급여관련 세금 (Payroll taxes)
 - 주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
 - COVID-19 로 인한 유급병가(qualified sick leave) 또는 가족 휴가 (family leave) 지급액으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. 에 의거 credit 을 받은 경우
- 대출금은 급여비용, 의료보험료 지급, mortgage payments, rent, utilities 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가능함.
- 대출금의 time frame 은 2020 년 2 월 15 일부터 6 월 30 일 (covered period).
-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음.
 - 10 년 만기 (maturity period)
 - 4% 이하의 이자율
 - 개인 보증이 필요없음
 - 해당 법인의 소유주 (owners), 임원 (officers), 이사 (directors) 에게 대출금의 상환청구 하지 않음 (no recourse).
 - 대출자가 (borrower) 원하면 대출금의 상환을 6 개월에서 1 년 동안 연기할 수 있음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대출금 수령후 8 주 동안 대출자가 지불하는 다음금액의 합계 만큼 대출금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에 하기 비용에 대한 증빙을 종업수 & 급여액과 함께 제출.
 - 급여 비용 (payroll costs)
 - Mortgage interest
 - Rent
 - Utilities
- 대출금 상환면제 금액은 비 과세 대상 (non-taxable) 임.
- 상기 대출 상환 면제금액은 직원수의 감소가 있거나 직원 급여의 25% 이상 감소가 있을 경우 혜택이 줄어듬.
- 대출 상환 면제 금액은 다음의 비율 또는 금액 만큼 감소함
 - 대출금 수령후 8 주 동안 월 평균 full-time 직원수 (full time equivalent employee) / 2020 년 2 월 15 일부터 6 월 30 일 또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2 월 29 일 까지 월 평균 full-time 직원수
 - 2020 년 1 분기 동안 총 급여액과 비교해서 대출금 수령후 8 주 동안 총 급여액의 감소가 25% 이상일 경우 25% 초과분 (연봉 \$100,000 이하 직원의 급여 기준)
-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을 받는 경우 Employer Retention Credit 은 사용할 수 없음.

2.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(EIDLs – SBA 7(b)(2))

1)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

-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(3 월 6 일 제정) 에 의거 도입된 loan 으로
- COVID-19 로 인해 치명적 경제적 손실을 받은 (중)소기업,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임.
- \$2,000,00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\$25,000 이상의 대출은 담보 (부동산 포함) 가 필요.
- 대출 금액 결정은 실질적인 피해와 회사의 재정적 필요성을 감안함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대출금은 채무 (financial obligations) 와 회사 운영 비용 (operating expenses) 용도로 사용 가능함,
- \$200,000 이하의 대출의 경우 개인보증이 면제됨.
- 대출금의 time frame 은 2020 년 1 월 31 일부터 12 월 31 일 까지임.
- 대출 신청후 3 일 이내 \$10,000 까지 grant 가능
- 상환기간은 30 년을 넘지 않음.

2) The CARES Act

- EIDLs 이 501 ©(6) 비영리단체와 sole proprietors, independent contractors 에게도 이용가능해짐.
- 담보 없이 신용점수 (credit score) 에 의해서만 EIDLs 의 승인이 가능해짐.
- 대출자 (borrower) 는 \$10,000 emergency grant 를 받을 수 있으며, 유급휴가, 직원 급여 지급, mortgage, rent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음.

3. Income Tax Relief

1) Net Operating Losses (이월 결손금)

- The TCJA 에 의거 2018 년부터 net operating losses (“NOLs”) 은 carried forward 만 되고 carryback 이 안되며 taxable income 의 80% 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
-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, 2019, 2020 년에 발생한 NOLs 은 80% limitation 의 제약없이 taxable income 의 100% 를 offset 할 수 있음.
- 또한 2018, 2019, 2020 년에 발생한 NOLs 은 과거 5 년까지 carryback 이 가능해짐
- 다만 Section 965 (TCJA 에서 제정된 foreign subsidiary earnings deemed repatriated) 에 의거 포함되는 income 은 위의 carryback 에 의해 offset 되지 않음.
-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(“REITs”) 은 NOL 의 carry back losses 가 안됨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Corporation 은 Form 1139 (Corporation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) 의 file 을 하여 NOL carryback 을 통한 refund 을 신청할 수 있음. Refund 는 통상적으로 90 일 이내에 처리가 됨.
- 또한 corporation 은 Form 4466 (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) 를 file 함으로써 당해년도 지급한 예납에서 대해서 refund 을 받을 수 있음.
- 대부분의 states (예: New York, California) 은 federal NOL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NOL 계산 방법이 있음.

2) Excess Business Loss (for pass-through businesses and sole proprietors)

- Section 461(l)(1) 에 의거 2025 년 까지 \$250,000 (single taxpayer) & \$500,000 (married filing jointly) 이상의 business losses 는 공제가 제한되어 NOL 로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나,
-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, 2019, 2020 년에 한해서 위의 section 461(l)(1) 규정 (excess business loss 제한 규정) 을 suspend 함.

3) Credit for Alternative Minimum Tax (corporation)

- The TCJA 에 의거 2018 년부터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("AMT") 가 없어졌으나 과거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AMT credits 을 사용하여 regular tax liabilities 를 줄이고 2018 년부터 2021 년에 걸쳐 남은 credits 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.
- The CARES Act 에 의거 2019 년 세금보고에서 AMT credits 을 100%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corporation 은 AMT credits 환급을 2018 년에 받도록 선택 가능함.
- Refund claim 은 IRS 에 의해 90 일 이내에 처리.

4) Business Interest Deductions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The CARES act 에 의거 section 163 (j) limitation (공제 가능한 business interest expense 제한 규정) 상의 "30% limitation of adjusted taxable income (AGI)" 규정이 2019 년과 2020 년에 한해 AGI 50%로 상향조정됨.
- AGI 의 30% limitation 으로 선택 (election) 가능함.
- Section 163 (j) limitation 은 과거 3 년 기준 연 평균 매출액이 \$26,000,000 (2020 년 기준)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.
- 2020 년 세금보고에서 business interest limitation 을 계산할때 2019 AGI 사용가능함.
- Partner (partnership tax return) 는 2020 년부터 AGI 50% limitation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. 하지만 2019 년에 공제하지 못한 interest expense 를 2020 년으로 carryover 해서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의 50% 를 2020 년에 공제할 수 있음.

5)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

- The TCJA 가 입법화 되기전에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(QIP -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, retail improvements, and restaurant property) 는 15 년의 내용년수로 감가상각이 가능하였으나,
- The TCJA 로 인해 QIP 의 내용년수가 39 년으로 바뀌어 QIP 의 "bonus depreciation" 적용이 불가능했음 (Retail Glitch).
- The CARES act 에 의거 QIP 의 내용년수가 15 년으로 수정되어 2018 년 세금보고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.
- QIP 관련 2018, 2019 년 수정 세금보고 가능함.

6) Refundable tax credit for individuals

- 납세자 1 인당 최대 \$1,200 (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\$2,400) 까지의 check (현금 지급) 이 가능.
- 해당 조건: 세금보고를 "세법상" U.S. Resident 로 2018년이나 2019 세금보고를 한 사람. (비이민비자 소지자 포함)
- 자녀 한명당 \$500 check 을 지급하며 지급 받는 자녀수의 제한은 없음.
- Check (현금 지급) 금액은 AGI 가 single \$75,000 (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\$150,000/ head of household 의 경우 \$112,500) 을 초과하는 경우 \$100 당 (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\$200 당) 지급액이 \$5 씩 감소함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따라서 AGI 기준 single \$99,000, 부부 공동 세금보고 \$198,000, Head of household \$136,500 이상인 경우 check (현금지급) 을 받지 못함.
- 수령방법: 신청서 없으며. 세금 보고된 은행 계좌나 주소로 발송예정.
- Check (현금 지급) 은 2020 년 AGI 기준이 되어야 하나 아직 AGI 가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2018 년 또는 2019 년 AGI 가 기준이 됨 (가장 최근에 file 한 세금보고 상의 AGI 기준)
-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 (예: Social Security benefits 수여자 등) 의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information 기준으로 check 지급.
- Check (현금 지급) 은 면세 소득 (non-taxable) 이며 2020 년 세금보고에서 받을 refund 의 선지급 (advance) 이 됨.
- 따라서, 2020 년 세금보고 후 납세자는 2020 년 AGI 에 근거하여 refundable tax credit 을 재계산해야 하며 2020 년 AGI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credit 이 있으면 차액만큼 credit 을 받음.
- 하지만, 2020 년 AGI 기준으로 받을 refundable tax credit 이 2018 년 또는 2019 년 AGI 기준으로 받은 credit (현금 지급) 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아직 없음.

7) Retirement Funds

- 개인은 59.5 세 전에 qualified retirement accounts 에서 \$100,000 까지 10% early withdrawal 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음.
- 자격: COVID-19 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COVID-19 로 인한 자가격리, 해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
- 인출된 자금은 COVID-19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.
- 인출된 소득에 대한 tax 는 3 년에 걸쳐 과세소득이 됨 (3 년 이내로 election 가능).
- Contribution 상한금액 (cap) 에 상관 없이 인출후 3 년이내에 recontribute 가능함.
-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인출에 적용됨.

8)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(RMD)

- 2020 년에 한해 defined contribution plans 과 IRAs 에 대해 72 세에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함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9) Charitable Contributions

- 2020 년부터 \$300 한도로 501(c)(3) 비영리단체에 지급되는 현금 기부금에 한해 AGI 를 줄이는 "above the line" 기부금 공제 (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) 가 가능해짐.
- 개인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 (standard deduction) 를 선택해도 가능.
- 2020 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개인은 AGI 의 100% (과거 50%), corporation 은 taxable income 의 25% (과거 10%) 기부금 공제를 할 수 있음.
- 2020 년에 한해서 food inventory 관련 기부금 공제를 corporation 은 taxable income 의 25% (과거 15%) 까지 할 수 있음.

10) Employer Payment of Student Loans

- 고용주가 \$5,250 까지 직원의 학자금 (student loan) 을 갚아줄수 있고 직원은 채무면제 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음.
-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
- The CARES act 제정일 (2020 년 3 월 27 일) 부터 2021 년 1 월 1 일까지 유효함

4. Payroll and other Taxes Relief

1) Deferral of payment of employer portion of Social Security taxes

- 고용주는 직원 급여 관련 social security tax (6.2%) 를 부담해야 함.
- 2020 년에 발생한 고용주 portion 의 social security tax 또는 자영업자의 self-employment tax 중 social security tax portion (6.2%) 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함.
-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, self-employment tax 의 50%는 현재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함.
- 연기된 금액의 50% 는 2021 년 12 월 31 일, 나머지 50%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납부 가능함.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The CARES act 제정일 (2020 년 3 월 27 일)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함

2)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

- 정부기관 등의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100%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 사업체의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(qualified wage) 에 대해 refundable payroll tax credit 을 지원받을 수 있게함.
- 2019 년 기준 100 명 이상의 직원 고용주의 경우 급여 (qualified wage) 는 COVID-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말하며 100 명 이하 직원 고용주의 경우 모든 급여가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됨.
- 또한 2020 년 1 분기 동안의 매출액이 전년 1 분기 대비 50% 이상 감소한 경우도 해당됨.
-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 매출액 대비 80%까지 회복될때 까지 credit 의 지원이 가능함.
- 2020 년 3 월 12 일 이후 2021 년 1 월 1 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 (qualified wage) 에 대해서 직원 1 명당 \$최대한 5,000 까지 payroll tax credit 을 받게함.
- Credit 금액은 50% 의 급여 (qualified wage) 이며 급여는 1 명의 직원당 \$10,000 을 넘지 못함.
- Credit 이 payroll tax 를 초과하는 경우 refund 이 가능 (refundable credit).
- 고용주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Payroll Protection Program (PPP) 의 채무자인 경우 credit 이용 불가능.
- 유급병가 (paid sick leave under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) 로 인한 payroll tax credit 을 받는 경우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금액이 그 만큼 감소함.

5. Filing and payment extensions

1) Federal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-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(IRS) 에 의해 개인, 신탁 및 회사 세금보고 (individual, trust & corporate tax return) 의 filing & payment due date 이 7 월 15 일로 조정됨 (Notice 2020-18).
- 7 월 15 일로 연기된 tax payments 는 2019 연방세 납부액 (federal income tax payments), 2019 자영업세 납부액 (payments of tax on self-employment income), 2020 예납 (2020 estimated federal income tax payments (including payments of tax on self-employment income)) 을 포함.
- 7월 15일까지 연장되는 기간동안 late payment penalty & interest 는 면제되나 ,개인은 납부세액 \$1,000,000, 법인은 \$10,000,000 까지만 면제됨.
- 4 월 15 일이 due date 인 fiscal year filer 도 7 월 15 일로 세금보고 기간 연장됨.
- 4 월 15 일 due date 이 original due date 또는 extended due date 여부와 상관없이 7 월 15 일로 연장.
- Extension due date (10 월 15 일) 이 연장된 것은 아님.
- Filing & payment due date 이 4 월 15 일이 아닌 경우 (예: 5 월 15 일, 6 월 15 일 등) 에는 기간 연장이 되지않음.
- 2019 예납에서 발생한 overpayment 를 환급받기 위한 Form 4466 (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) 의 due date 는 2020 년 4 월 15 일임.
- 2020 년 1 분기 예납의 due date 도 4 월 15 일에서 7 월 15 일로 연장되었으나 2 분기 예납의 due date (6 월 15 일) 는 연장되지 않음.
- Payroll & excise taxes 의 due date 는 연장되지 않음.
- Estate & gift taxes 의 due date 도 7 월 15 일로 연장되었음.
- Basis Erosion and Anti-Abuse tax (BEAT) payment 과 form 8991 의 due date 도 7 월 15 일로 연장됨.
- 7 월 15 일까지 세금보고 file 을 못하는 경우 extension 을 file 하여 10 월 15 일까지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예상 세금액 (extension payment) 은 7 월 15 일까지 납부해야 penalties 와 interest 를 피할 수 있음.

<https://www.irs.gov/newsroom/filing-and-payment-deadlines-questions-and-answers>

SBA Loans & Tax Law Updates (The CARES Act)

2) States

A. New York

- Executive Order No. 202.12 에 의거 4 월 15 일이 due date 였던 New York State personal income tax, fiduciary and corporation tax returns 의 due date 가 7 월 15 일로 조정됨.
- 또한 금액에 상관 없이 tax payments 의 due date 도 7 월 15 일로 연장됨.
- 연장에 따른 penalties & interest 없음.
- Tax payment 미납에 따른 penalties 와 interest 는 7 월 15 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함.
- NY payroll tax 의 deposit 은 연장되지 않음.

<https://www.tax.ny.gov/pdf/notices/n20-2.pdf>

B. New Jersey

- New Jersey tax filing & payment due date 은 2020 년 3 월 30 일 기준으로 4 월 15 일로 7 월 15 일로 연장되지 않음.

<https://www.state.nj.us/treasury/taxation/njit27.shtml>